

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8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2. 27.

이쌍자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01. 03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01. 14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쌍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계 균형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의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(안 제5조~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7호
 - 예고기간: 2024. 12. 27.(금) ~ 2025. 1. 2.(목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고성군 지역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규정함.

- (안 제3조 ~ 제4조) 군수 및 군민의 책무

- 안 제3조에서는 생태계의 보전,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 서비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, 안 제4조에서는 고성군에서 수립·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군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함.

- (안 제5조) 사업추진

-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, 그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, 기업·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(안 제6조) 협력체계 구축

-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. 14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